

4.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중 국토이용계획안의 자문을 추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한 것을 1항에 국토이용계획안을 추가(안 제2조1항)

☐ 검토보고

-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향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 입안한 국토이용계획안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 국토이용계획 입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행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3의 시·구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인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등의 범위를 일탈한 내용이라 사료되나 순수자문의 기능으로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